

[별표 7의3] <개정 2017. 9. 4.>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기준(제22조 관련)

구 분	검 사 기 관 지 정 기 준
검사인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 및 이규칙 제25조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받은 사람 6명 이상.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검사인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하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승강기 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의 승강기 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검사설비	1. 조도계 2. 각도계 3. 테이퍼 틸트계이지 4. 순간식 회전속도계 5. 절연저항계 6. 전류계 7. 전압계 8. 버니어캘리퍼스 9. 푸쉬풀계이지 2대 이상 10. 진동소음측정기(가속도·감속도 측정기능을 포함한다) 1대 이상 11. 토크렌치 2대 이상 12. 접지저항계 2대 이상 13. 도어운동에너지 측정장비 2대 이상 14. 분동 5톤 이상

비고

1. 상기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의 기준은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사무소마다 갖추어야 한다.
2. 검사인력은 직접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1인당 연간 정기검사 800대를 초과하여 검사할 수 없다.
3. 검사설비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설비는 검사인력 2명당 1대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